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

2015. 12.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

□ 목 적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

□ 업무 개요

- ① 법적 근거
 - (출판사 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법 제9조(신고),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및 제28조(과태료)
 - *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
 - * 시행규칙 제2조(신고), 제3조(변경신고),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5조 (신고 상황의 보고) 및 별지 제1, 2, 3호 서식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출판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여야 함
 -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정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신고확인증 첨부)하여야 함.
 - (인쇄사 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 법 제12조(신고),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및 제15조(과태료)
 - * 시행령 제14조(신고), 제15조(변경신고),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제17조 (신고 상황의 보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별지 제1, 2, 3호 서식
 -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쇄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서식(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여야 함

-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의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정 서식(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신고필증 첨부)하여야 함.

② 신고 개요

- ㅇ (신고 사항)
 -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 및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같음
- ㅇ (신고 절차)
 - (신고인) 신고서 제출
 - (특별자치도·시·군·구)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신고필증) 발급
- ㅇ (제출 서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신규 신고 :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 ※ 임의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변경 신고 :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필증
 - ※ 임의 제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폐업 신고 : 출판사 신고확인증·인쇄사 신고필증을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

③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
 -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 의견청취 등 관련 조항 준용

○ 신고한 영업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 ⑤ (생략)

- ⑥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폐업한 경우
-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시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④ 신고·폐업 등 상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별 신고폐업 등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특별자치시·도 포함)는 관할 시·군·구의 보고 상황을 취합,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 업무처리 기준

①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신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이 가능

◈ 1인 무점포 출판사

-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 인적 용역 제공자와 유사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 출판인)로 볼 수가 있음.
 -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건축법상 용도 규정(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하지 않고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출판사 신고서」에 사업체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 ※ 문화관광부 1인 무점포 출판사 허용지침(출판산업과-45, 2005.1.7)
- 특히,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 개정으로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해서는 건축 법상 용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허용함.
 - ※ 건설교통부 건축법령 검토 회신(건축기획팀-4892, 2006.8.7)
- ② (상호에 대한 지도·권장)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상호) 사용에 관한 지도·권장사항
 - (상호의 사용)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은 단일 상호를 사용 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상호와 일치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함(※ 상법 제21조)

【상법 제21조 (상호의 단일성)】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 상호의 동일성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출판사/인쇄사 등록 검색시스템 확인 또는 출판사·인쇄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시· 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
-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상법 제22조)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상표의 등록)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상호를 지역제한 없이 보호 받고 싶다면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을 안내하여야 함(※ 상표법 제50조) 【상표법 제50조 (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물의 용도 관련 안내)

- (건축물 용도의 변경)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 및 인쇄사의 입지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 규정에 따라 설립이 제한됨.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출판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 인쇄사: 공장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물물의 종류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가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또는 신고)를 거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고시로 출판사 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안 내하여야 함.
- ④ (소재지 변경 신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소재지 변경 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입지에서 하여야 하나, 민원인이 전출지에서 신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 법령에는 변경 신고의 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으로 변경 신고는 소재지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전입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임.

- 즉, 사업장의 전입지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고, 구비서류와 관계서류의 사본을 전출지의 사업장 소재지 행정청에 송부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함.
- ※ 유사사례 :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전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이전 등
- 그러나, 민원인이 종전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해당 관청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 신고서를 접수·처리한 후, 그 구비서류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입지 관할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함.

□ 협조요청 사항

- ①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 시스템 입력 및 관리 협조
 -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고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호의 중복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 * 사이트 주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rightarrow 자료공간 \rightarrow 현황자료 \rightarrow 출판사・인쇄사 등록 현황(http://book.mcst.go.kr)
 - 신고청(특별자치도·시·군·구)은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신고, 변경 신고, 폐업 등 업무처리시 등록검색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즉시 입력·관리**하여 동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② 분기별 출판사・인쇄사 신고 및 폐업 등 상황 보고 철저
 - 시·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특별자치시·도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붙임 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관련 질의응답 사례

번호	질의 및 답변
	< 인쇄사 신고범위에 대하여 >
	 [질의] 인쇄사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간행물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 건지요? 전화번호부나 관광안내책자, 지도가 간행물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제본 등의 업무는 인쇄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만 하고인쇄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식당 등에서 스폰을 받아 관광안내책자를 기획하여 인쇄소에 제작을 의뢰, 판매하는 행위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하 '인쇄법')상 저촉되는지 여부도궁금합니다.
1	[답변] · 간행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전자출판물은 콘텐츠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을 표시하여 만든 것이며, · 전화번호부나 관광안내 책자, 지도 등이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간행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간행물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제본업무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 1. 전단지(팸플릿) 등과 같은 홍보물을 인쇄한다면 인쇄법에 의한 인쇄사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한 인쇄업인경우에 한하여 인쇄사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스티커, 명찰, 명함제작 또는 금박을 찍는 곳은 인쇄사 신고대상이 아니며,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간행물'을 인쇄하지 않는다면 인쇄사로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인쇄기획업무만 하는 '인쇄기획사'의 경우 인쇄사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번호	질의 및 답변
2	< 다이어리 판매시 출판사 신고 여부 >
	[질의] • 저희 회사에서 다이어리 종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데, 따로 출판사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맞는지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출판법에 의하면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며, 출판이란 간행물(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및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 등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다이어리만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따라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출판사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판사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문화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담당 직원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 창업보육센터내 인쇄사 설립 가능 여부 > [질의] * 저희가 입주한 창업보육센터는 도심 공장형태로 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증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쇄사 설립여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 * 인쇄사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쇄법 이외에도 관련 법규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관청에서 그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인쇄사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공장으로 용도가 분류되어 있으며, 창업지원 등과 관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쇄사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의 및 답변
4	<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출판인쇄사 겸업 가능여부 >
	 [질의] *출판사를 하던 자가 동일 장소에 인쇄사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일 장소에 동일인이 출판사, 인쇄사를 병행하여 영업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인쇄사 시설기준은 인쇄시설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무방하다고하는데, 인쇄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공판인쇄기만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판시설, 제판시설 또는 제책시설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답변] • 현행 출판법 및 인쇄법에 의하면, 동일인에 의한 동일 장소에서의 출판사와 인쇄사 겸업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겸업도 가능하나,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인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된 인쇄시설 중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인쇄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지사에서 본사 제작 교재로 방문수업시 지사의 출판사 신고 대상여부 >
5	[질의] · 본사에서 제작하는 교재 등을 가지고 방문 수업을 하는 경우 출판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간혹 방문 판매로 등록하는 곳도 있고 기타 강습소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 본사에서 교재를 제작하는데 각 지사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출판을 등록 할 수가 있나요?
	[답변] · 출판법에 의하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정가, 국제표준 자료번호 등을 표시한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판사란 이러한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뜻합니다. · 그러므로 본사(점)에서 제작하는 교재 등을 가지고 지사(점)에서 방문수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사는 출판업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번호	질의 및 답변
	< 법인주소와 사업장주소 불일치시 신고필증 교부 여부 >
	 [질의] · 관내 출판사 변경신고시 법인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법인 상에 등재되지 않은 사무소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존에 이미 신고필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법인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 출판사 신고필증을 교부해도 되는 것인지요?
6	 [답변] ・출판법 제9조에서는 출판사의 소재지에 대해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법인 등기부상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민원 사안에 대해서는 출판법 이외에도 세법 등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시설 내에서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출판사 신고 여부 > [질의] ·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종교시설 내에서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출판사 신고 대상이 되는지?
7	[답변] • 출판법 제2조에 의하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출판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간행물은 형식상으로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시하여 만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내용상으로는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출판사 신고를

번호	질의 및 답변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해당됩니다. ·종교시설 내에서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교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가 선교 등의 목적과 결부되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출판사의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건과 관련해서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계규정을 검토, 적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 제품 판매를 위해 인쇄를 할 경우 신고대상 여부 >
8	[질의] · 칫솔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구매자가 제품 주문시 당사의 제품에 구매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인쇄하여서 납품하기를 원합니다. 종류와 수량이 많다보니 인쇄회사에 의뢰를 하지 않고 당사에서 인쇄 기계를 설치하여 직접 당사의 제품에 인쇄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인쇄 종류는 실크인쇄이며 당사에서는 인쇄업을 영위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당사의 제품에 주문자의 상호를 직접 인쇄하고자합니다. · 이럴 경우 당사에서 인쇄업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요?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닐 때는 기계를 사다가 당사가 직접 인쇄하여서 제품을 판매하면 되는지요?
	 [답변] ・ 인쇄법 제12조(신고)에 의하면 출판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 제작 등을 위해서 인쇄한다면 인쇄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타 법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4조(부수 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번호	질의 및 답변
	규정과 관련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판사 명칭 사용에 대하여 >
	[질의] ·출판사 이름은 전국적으로 하나만 통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시군구마다 같은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도 그대로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	 [답변] ・출판법에서는 출판사 신고에 대하여 출판사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신고토록하고 있으나, 출판사 명칭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출판사의 명칭은 상법 등 다른 관계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는바, 상법 제22조에서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업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출판사 상호를 지역제한 없이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법」에 따른상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다른 출판사명으로 신규등록 가능 여부 >
10	[질의] ・기존 '○○사'라는 출판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른 출판사명으로 출판사 신규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출판법 상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인이 수개의 출판사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수개의 출판사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번호	질의 및 답변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준수여부,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인쇄시설 문의 >
11	[질의] • 인쇄법 제2조에 의하면 인쇄사라 함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인쇄시설 중 물적시설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조판시설, 제판시설 또는 제책시설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의 시설 중 1가지만 갖춰지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 여기서 조판시설로 일반컴퓨터와 프린터기를 합하여 조판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인쇄사 신고는 인쇄법 제12조에 따라 출판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컴퓨터의 기종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고하고자 하는 업소의 장비가출판법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조판시설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사의 물적시설 변경에 대하여 >
12	 [질의] 인쇄사의 물적 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대상 여부 [답변] 인쇄법 제12조에 의하면 변경신고는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에는 인쇄사의 물적 시설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물적 시설만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번호	질의 및 답변
13	< 기존 인쇄시설을 공동 사용으로 타 인쇄사 신고 가능여부 >
	[질의] · 기존의 타 지역 인쇄사 인쇄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다른 명의의 인쇄사 신고 가능 여부
	[답변] · 인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쇄사는 인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동 시설을 공동 사용하면서 별도의 인쇄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14	< 제책시설의 범위 >
	[질의] •인쇄사 물적 시설 중 제책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답변] ・인쇄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제책시설 등의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인쇄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책은 제본이라고도 하며, 이의 사전적 의미는 "인쇄된 낱장 종이를 순서대로 추려서 책으로 만들어 내는 일"(두산 세계대백과사전 참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본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인쇄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 인적·물적시설이 2개 자치단체에 분할되어 있을 경우 >
	[질의]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의 소재지가 2개의 자치단체에 분할되어 있을 경우
	[답변]

번호	질의 및 답변
	 인쇄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출판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쇄사는 물적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인쇄사의 건축물 용도 문의 >
	[질의] ·출판사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쇄사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공장'과 그 외 다른 용도가 있는지?
16	[답변] ・인쇄사의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에 해당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그러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 용도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의 건축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문의 >
17	[질의]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의거 체납자(인쇄사의 부가 가치세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서(공문)가 관할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출판사 및 인쇄사는 관허사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세무서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처리 방법은?
	[답변] · '관허사업'이란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

번호	질의 및 답변
	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히, 납세자가 3회 이상, 그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지방세인 경우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 이 경우,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출판사 및 인쇄사는 신고 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무신고 영업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등으로 미루어 그 신고 수리는 금지된 영업활동에 대한 자유를 회복하는 수익적 처분으로 볼 수도 있는 바, 관허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관할세무서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특히 관허사업 제한의 경우에도 행정법상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과잉결부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바, 납세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허사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 및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18	 < 직권폐업 가능 여부 > [질의] · 출판사(인쇄사)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 직권 폐업처리 가능 여부 [답변] < 출판법 제11조 3,4항, 인쇄법 제13조 3,4항 직권말소 조항 신설 2015.5.18. 시행 2015.11.19.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판사(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판사(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번호	질의 및 답변
	출판사(인쇄사)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 의견청취 등 관련 조항 준용
19	< 물적 시설 미비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 > [질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인쇄사에 대한 행정처분(직권폐업 등) 가능 여부 [답변] ●인쇄사의 물적 시설은 인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인쇄시설을 말하며, 인쇄사 신고시에 이들 인쇄시설 중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신고 수리토록하고 있으므로, 신고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있으나, ●동법의 법정 서식에 의한 신고 사항은 아니므로, 현재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서 행정처분(직권폐업 등)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쇄법이 과거의 규제 또는 단속에서 벗어나, 인쇄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제정된 것임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해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	 신고 후 신고필증 미수령시 과태료 부과 여부 > [질의] · 출판사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수령하지 않고 있으면 자동폐업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취소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번호	질의 및 답변
	 출판법에 의한 출판사의 신고 수리는 관할 행정청이 상대방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서 수령하는 행위로 신고의 법률효과는 신고필증의 상대방에 도달여부와는 무관하게 관할 행정청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필증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폐업처리 되거나 등록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행정청의 신고의 수리 또는 그 거부의 의사는 당해 신고필증의 교부여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고필증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법률효과가 유효하게 발생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할 행정청에서 신고필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1	 (교육연구시설 내에서 출판사 등록 여부 > [질의] 인쇄사의 경우 대학 내의 창업보육센터가 도심공장형태로 등록을 하면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 없이 인쇄사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학교 내의 창업진흥센터일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도 출판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혹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판법은 출판사 신고 시 출판사 및 경영자의 이름과 소재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출판사 신고 수리 시 출판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 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 혹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관련 법령 규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제2조(신고) 「출판문화산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업 진흥법」(이하 "법"이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라 한다) 제9조제1항 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		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
사·시장·군수·구청장(자		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다.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		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
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		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재지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
2. 경영자(법인 또는 단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인 경우에는 그 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
표자)의 성명 및 주소		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군수・구청장(자치구의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다.
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		
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
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		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제2호서식과 같다.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3조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

-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돌려 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 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 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 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 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 판사 영업을 폐업하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발급을 포함한다).

-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
 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
 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
 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
 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
 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와 같다. 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출판사의 영업행위 를 한 자
- 2. ~ 4. 삭제
- 5. ~ 7.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제 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서식)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4. 7 E / U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 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1)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 연한 경우		50만원 70만원
다)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나) 변경신고를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100만원 10만원 30만원

지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50만원
지연한 경우 라)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0만원
나. ~ 사. (생략)	

출판사 ([]신규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명 칭		전화번호			
사업체	소재지					
ᄗᆝᇴᆍᅵ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제9조제1형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	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특별자치도·시 · 군 · 구 조례에 따라 ()원

유의 사항

-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 - 24	특별자치도・시・군 - 담당부서)	• 구(신고	

	출	판사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제	호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00 X T/11/1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था म भ	주 소					
신고 연월일						
「출판문화산업 전 사 신고를 마쳤음을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판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분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출판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번호	구분	신고번호	신고 출판사	소재지	우편번호	변경	변경신고(변경 전) 대표자 사항(변경 후)	변경신고(변경 전)					
2002	1 4	신고일	명칭		전화번호	신고일		0111274	네业사	HITA	네표사	네业사	ПТМ

- * 작성 시 유의사항
- 1. 구분란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 폐업 또는 전입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란에 그 날짜를 적습니다.

행 정 기 관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	년자 직위(⁻	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처리과	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호() 팩스	<u> </u>		/ 공무원의 전자우	면주소	/ 공개 구분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 시행령

- 제12조(신고) 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 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
 -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등)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 납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 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쇄사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 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 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 2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 식과 같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발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7조(신고상황의 보고) ①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 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 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식에 따른다 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 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 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5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ㅇ 인쇄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 2)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로 고의성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였다고 인 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법 제15조	
신고하지 않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1항	
가.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50만원
나.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70만원
다.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0만원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15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1항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10만원
나. 변경신고를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0만원
다. 변경신고를 2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50만원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ᄭᆸᄺ	소재지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점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없 음

유 의 사 항

-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신고를 하지 않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4	<u> </u>	처리기관 - 30	반: 특별자치도·시·근 _(신고 담당부서)	군・구	

신고번호 제 호

인쇄사 신고필증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신고 연월일:

위와 같이 인쇄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변경신고사항							
처 리 날 짜	변경내용 및 그 원인	행정청 확인					
	- 32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인쇄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분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쇄사 신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 번호 구분	신고번호 신	신고사	소재지	우편번호	변경 (폐업)	대표자	변경신고	
	一下正	신고일	명칭	그 제시	전화번호	신고일	네표사	사 항

- * 작성 시 유의사항
- 1. 구분란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 변경신고 사항란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항을 모두 적습니다.

행 정 기 관 장 직인